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6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6월 17일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며, 본 조례안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(안 제2조제4호)
-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4항)
-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으로 함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(이하 “녹색교통지역”이라 한다)”이란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.

안 제3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이라 한다.

안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.

안 제6조 중 “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”을 “운행제한 대상지역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 4. <u>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 지역(이하 “녹색교통지역”이라 한다)</u>이란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<u>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특별대책 지역을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또한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·홍보하여야 하며, 다른 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<u>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또한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·홍보하여야 하며, 다른 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) ① ~ ③ (생략)</p>	<p>제5조(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5조(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〈신 설〉

제6조(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) 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을 말한다.

④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) 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을 말한다.

④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6조(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) 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을 말한다.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(이하 “녹색교통지역”이라 한다)”이란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이라 한다.

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6조 중 “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”을 “운행제한 대상지역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6조(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)
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
시 전 지역을 말한다.

제6조(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)
----- 운행제한 대상
지역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을
말한다.